

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
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윤남진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6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 (제안설명자 : 윤남진 의원)

-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

4. 주요내용

- 양봉산업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밀원식물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밀원식물을 확충하고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가. 제출배경

-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은 기후변화, 병해충 등으로 인해 꿀벌을 기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 이에 따른 생산성·경제성 하락 등으로 양봉농가 감소, 생산기반 위축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음
-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6번째로 양봉농가 및 꿀벌 군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, 꿀벌실종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양봉농가에 큰 타격이 있었음

- 농가 및 사육군수 : 2,705호 259천군(전국대비 10%) ⇒ 전국 6위 규모
- 규모별 : (50군미만) 1,168호 18천군, (50~99군) 513호 33천군, (100군이상) 1,024호 208천군
- 종 별 : 개량종 2,221호 248천군, 토종별 484호 11천군

- 또한, 양봉산업은 다른 축산업과 달리 단순히 양봉산물을 채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꿀벌이 화분매개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꿀벌을 보호·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양봉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나. 주요 검토내용

1)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관하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‘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’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

-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,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3조에서는 ‘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**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밀원식물을 보호·육성·보급**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으며, 법 제7조 전문인력 양성,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, 제10조 밀원식물의 조성, 제12조 양봉 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·보급하여야 한다.

- 따라서, 「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제정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
-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

구 분	조 례 명	제정일자
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-11
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-02
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-09
경 기 도	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03
강 원 도	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07
충 청 남 도	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	2020-03
전 라 북 도	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02
전 라 남 도	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0-06
경 상 북 도	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0-09
경 상 남 도	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	2020-06

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는 양봉산업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밀원식물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, 법 제3조를 반영한 사항으로 보여짐
- 안 제4조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우리도 실정에 맞는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내실있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
- 안 제5조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제7조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
- 안 제6조는 밀원식물을 확충하고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, 이는 법 제10조의 밀원식물의 조성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 및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인해 밀원식물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양봉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양봉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양봉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, 이에 밀원식물을 확충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은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
- 안 제7조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
 - 법 제12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
 - 특히 양봉산업에 있어 큰 어려움은 밀원수 감소 및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, 병충해 등으로 꿀벌에 알맞은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, 이에 “꿀벌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”을 기존의 법과 다르게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양봉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신규 양봉농가 및 사육군수가 증가하고 있지만, 최근 밀원수 감소 및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, 병충해 등으로 인해 양봉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의 지속적인 경영난 등 산업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
- 특히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‘꿀벌실종’ 현상을 야기시켰는데, 이에 따라 화분 매개체로서 그간 작물의 수정을 돕는 등 공익적 역할을 해온 꿀벌의 급감은 과수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충북도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전문인력의 육성 및 밀원식물의 확충, 그리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명시하였으며, 그 내용이 우리도 실정에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함
-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이행하였음